■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[별지 제7호의5서식]

국외유학휴직 신청서

(제28조 관련)

신규(연장) [] 변경 []

인적사항	성 명		직 급(직 위)	
	부서명		생년월일	
	담당업무			
휴직 희망 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 ※ 최초 유학휴직 이후, 휴직기간 연장은 2년 이내만 가능		
유학기관	기관명			
	주 소			
	이메일 / 전화번호			
유형		학위취득 [] (학사[] 석사[] 박사[]) / 어학연수 []		
목적[1]				
훈련기관 타당성[2]				
업무 관련성[3]				
수학 계획[4]				
활용 계획[5]				
(변경시) 변경 사유[6]				

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유학휴직을 신청[], 변경 신청[] 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성 명 : 인 (서명)

작성요령

1) 목적 : 국외유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및 국외유학 필요성
2) 훈련기관 타당성 : 목적달성과 관련한 훈련기관의 적절성
3) 업무 관련성 : 연구 주제가 업무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 기재
4) 수학 계획 : 유학 기간 동안 학습 계획 기재
5) 활용계획 : 유학휴직 복직 후 활용계획 기재
6) (변경시) 변경사유 :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작성

※ 증빙자료 예시 : 입학허가서, 학사 일정표 등

<휴직을 목적 외 사용 시, 복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음>